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제정 2011. 12. 29. 규정 제186호
개정 2013. 03. 22. 규정 제215호
개정 2013. 04. 29. 규정 제216호
개정 2015. 04. 13. 규정 제259호
개정 2017. 09. 29. 규정 제329호
개정 2018. 06. 14. 규정 제350호
개정 2018. 07. 13. 규정 제355호
개정 2019. 06. 28. 규정 제376호
개정 2020. 07. 06. 규정 제401호
개정 2021. 05. 18. 규정 제430호
개정 2022. 10. 13. 규정 제461호
개정 2023. 01. 19. 규정 제471호
개정 2023. 12. 18. 규정 제4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범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15.4.13., 2018.6.14., 2020.7.6., 2022.10.13.>

제2조(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 등)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9.6.28., 2020.7.6., 2021.5.18., 2022.10.13.>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결정·조정 신청된 행위·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제외한다)
2.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결정·조정기준”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행위·치료재료 등의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등을 고려한 질병군상대가치점수(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한다)
3.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정신청된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질병군상대가치점수(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한다)
4.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5.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6.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확인 또는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요양급여기준 별표 1 제4호 단서에 따라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평가 및 본인부담률

8. 기타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상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6.14.]

[전문개정 2018.6.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8.6.14.>]

제3조(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①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동 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위원수로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경우 해당 호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수로 한다. <개정 2022.10.13., 2023.12.18.>

1.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 5명 이내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명(다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한다)
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4명
4.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 4명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담당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 각 1명
6.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 전문평가위원회별로 별표2에 따른 각 군별 1명(다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 한방관련 안건이 없는 경우 4군을 제외하고 6군에서 2명을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위원을 선정하되, 제1항제1호와 제4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10.1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따라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경우 별표1에 따른 각 군별로, 제1항제4호의 전문가의 경우 전문분야별로 추출군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 ④ 위원장은 각 전문평가위원회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의 위원을 선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원장은 제3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당초 선정된 위원 중 회의 참석 의사 표시를 한 위원이 70% 이하일 경우 제1항제1호,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추가로 선정하되, 그 방식은 무작위 추출로 한다.
- ⑦ 제6조제1항에 따른 간사는 결정·조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명단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8.6.14.>]

[전문개정 2021.5.18.]

제4조(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전문평가위원회는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5항 전단에 따라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8., 2022.10.13.>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의 경우 안전부의 절차는 제3조를 준용하고, 서면 의결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결과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결의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⑤ 선정위원은 대리인을 시켜 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서를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⑦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평가사항과 관련하여 결정·조정기준 제13조 제5항 후단에 따라 결정·조정 등의 신청자가 전문평가위원회에 의견진

술을 요청할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제목개정 2018.6.14.]

[전부개정 2018.6.1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18.6.14.>]

제5조(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 등) ① 전문평가위원회

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제5조의2를 따르며, 요양급여기준 별표 1 제4호 단서에 따른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제5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8.6.14., 2018.7.13., 2019.6.28., 2020.7.6.>

②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임상전문가 등으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4.>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의 실무검토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각 소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신설 2020.7.6.>

[본조신설 2013.3.22.]

[제목개정 2018.6.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8.6.14.>]

제5조의2(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위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이하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②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3에 따른 각 군별로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다만 별표3의 4군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개정 2020.7.6., 2022.10.13.>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별표3에 따른 4군 디지털의료계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조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 해당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 <개정 2020.7.6., 2022.10.13.>

④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각 군의 세부분야별로 추출하되, 안건에 따라 추출 시 세부분야 및 관련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0.7.6., 2022.10.13., 2023.12.18.>

1.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명 이상

2. 건강보험·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인공지능·디지털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1명 이상

⑤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관련학회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7.6.>

⑥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회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 또는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⑧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0.7.6.>

⑨ 제8항 단서에 따른 서면 검토의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7.6.>

⑩ 제8항에 따른 서면 검토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서면 검토 확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서면 검토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0.7.6.>

⑪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7항에 따른 검토 안건의 신청자가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요청할 때에는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6.>

[본조신설 2018.6.14.]

[전문개정 2020.7.6., 2023.12.18.]

제5조의3(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이하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

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18.>

③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9., 2023.12.18.>

1.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명 이상
2.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1명 이상
3.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명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④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2023.12.18.>

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회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서면 검토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서면 검토 확인서 및 별지 제12호서식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서면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른다.

⑩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기준,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1.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의 여부
2.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재료,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및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치료재료 해당 여부
3.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안전성 및 의학적 타당성
4. 대체 치료재료 비교 비용효과성

⑪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3년 주기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지속여부 등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재평가한다.

[본조신설 2020.7.6.]

제6조(간사) ①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사평가원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직무대리인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2.10.13.,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제7조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한다. <개정 2018.6.14.>

③ 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 공동위원회 회의,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 회의, 제5조의2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제5조의3에 따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4., 2020.7.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8.6.14.>]

제7조(업무의 위임)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6조에 따른 간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4., 2020.7.6., 2022.10.13.>

1. 제2조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제5조의2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및 제5조의3에 따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회의 평가사항에 대한 실무검토
2. 제2조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제5조의2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및 제5조의3에 따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제출 및 진술 요구
4. 결정·조정기준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8.6.14.>]

제8조(임상견학 등)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임상현황을 확인하거나,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29., 2018.7.1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18.6.14.>]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18.6.14.>]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14., 2020.7.6., 2023.1.19., 2023.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평가원 재직 임직원이 회의 참석을 위하여 근무지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세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19.6.28., 2023.1.1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18.6.14.>]

제11조(비밀의 유지 등) ① 위원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13., 2023.12.18.>

②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최 전까지 별

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활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7.13., 2023.12.18.>

③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람이 결정·조정 신청자 등과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 심의 시 당해위원 및 진술하는 사람의 참석 또는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9.6.28., 2023.12.18.>

④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정·조정 신청자 등은 특정 위원에게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 관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확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은 별표4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2., 2017.9.29., 2018.6.14., 2023.1.19.>

⑥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임 기간 동안 결정·조정 신청자 등이 발주하는 직무관련 연구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3.22.>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18.6.14.>]

제12조(청렴의 의무)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9.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18.6.14.>]

제13조(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 ①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관련 안건에 대하여 해당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상정 제외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본조신설 2015.4.13.]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6.14.>]

제14조(회의결과의 공개 등) ① 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일자, 참석위원, 신청구분(결정 또는 조정),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사항은 해당 안건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등의 결정·조정의 결과를 적용하는 시점 이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및 기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본조신설 2015.4.13.]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6.14.>]

부칙<규정 제186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가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규정 제215호, 2013.3.22.>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6호, 2013.4.29.>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59호, 2015.4.13.>

이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29호, 2017.9.29.>

이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50호, 2018.6.1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55호, 2018.7.13.>

이 규정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76호, 2019.6.28.>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01호, 2020.7.6.>

이 규정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30호, 2021.5.18.>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61호, 2022.10.13.>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71호, 2023.1.19.>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96호, 2023.12.18.>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3.3.22., 2015.4.13., 2017.9.29., 2018.6.14., 2019.6.28., 2020.7.6.>, <개정 2021.5.18., 2022.10.13.>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제3조 제3항 관련)

1.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구분	관련학회
1군(의과)	내과, 신경과, 신경정신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 및 호흡기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소화기학과, 심장학과
2군(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안면통증구강내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예방치과구강보건학과, 영상치의학과
3군(한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4군(간호)	한국간호과학회
5군(약제)	대한약학회
6군(기타)	대한3D프린팅융합의료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로봇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2.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구분	관련학회
1군(의과)	내과, 신경과, 신경정신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 및 호흡기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소화기학과, 심장학과
2군(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안면통증구강내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예방치과구강보건학과, 영상치의학과
3군(한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4군(간호)	한국간호과학회
5군(약제)	대한약학회
6군(기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디지털치료학회, 한국원격의료학회

3.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구분	관련학회
1군(의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4.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 3군을 제외한 1군, 2군, 4군 내지 6군에서 추출하되 한방 관련 안건이 있는 경우 4군을 제외하고 3군을 포함하여 추출한다.

구분	관련학회
1군(의과)	내과, 신경과, 신경정신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 및 호흡기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소화기학과, 심장학과
2군(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안면통증구강내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예방치과·구강보건학과, 영상치의학과
3군(한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4군(간호)	한국간호과학회
5군(약제)	대한약학회
6군(기타)	의용생체공학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3D프린팅융합의료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로봇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별표 2] <신설 2013.3.22., 2013.4.29., 2015.4.13., 2017.9.29. 2018.6.14., 2018.7.13.>, <개정 2021.5.18., 2022.10.13>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제3조제1항 관련)

1.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 3군, 4군의 경우 협회별 격차로 참석한다.

구분	기관
1군	대한의사협회
2군	대한병원협회
3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4군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5군	대한간호협회
6군	대한약사회

2.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구분	기관
1군	대한의사협회
2군	대한병원협회
3군	대한한의사협회
4군	대한한방병원협회
5군	대한약사회
6군	대한간호협회

3.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 3군, 4군, 7군의 경우 협회별 격차로 참석한다.

구분	기관
1군	대한의사협회
2군	대한병원협회
3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4군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5군	대한간호협회
6군	대한약사회
7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4.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 3군, 4군, 6군의 경우 협회별 격차로 참석한다.

구분	기관
1군	대한의사협회
2군	대한병원협회
3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4군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5군	대한간호협회
6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5.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 3군 내지 5군의 경우 협회별 격차로 참석한다.

구분	기관
1군	대한의사협회
2군	대한병원협회
3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4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5군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한국공공조직은행

[별표 3] <신설 2018.6.14., 2019.6.28., 2020.7.6.>, <개정 2021.5.18., 2022.10.13.>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 임상전문가 및 전문가(제5조의2 제4항 관련)

1.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 별표 1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군부터 3군 및 6군. 다만, 한방의 경우 별표 1의 3군에 따른다.

구분	세부분야(관련학회)
1군 내과계	내과, 신경과, 신경정신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결핵 및 호흡기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소화기학과, 심장학과
2군 외과계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안면통증구강내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예방치과구강보건학과, 영상치의학과
3군 내·외과계 외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4군 디지털의료계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디지털치료학회, 한국원격의료학회
5군 기타계	대한3D프린팅융합의료학회, 대한의료로봇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2. 건강보험·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인공지능디지털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 결정·조정기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가 중 건강보험·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다만, 한방의 경우 별표1의 3군에 따른다.

※ 제4군의 경우 위원장이 안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세부분야 전문가 이외에 [별표2] 3. 7군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단체가 추천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구분	세부분야(관련학회)
1군 내과계	내과, 신경과, 신경정신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결핵 및 호흡기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소화기학과, 심장학과
2군 외과계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안면통증구강내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예방치과구강보건학과, 영상치의학과
3군 내·외과계 외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4군 디지털의료계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디지털치료학회, 한국원격의료학회
5군 기타계	대한3D프린팅융합의료학회, 대한의료로봇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별표 4] <신설 2013.3.22., 2018.6.14., 2020.7.6.><개정 2022.10.13., 2023.1.19., 2023.12.18.>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 (제11조제5항관련)

1. 정의

- 가. “제척”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 관련자와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관계, 연구 용역 참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참석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기피”라 함은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항에 의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 “회피”라 함은 위원이 제출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항에 의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위원회 참석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 “평가대상 치료재료(인체조직)의 관련자”라 함은 평가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임직원 포함),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신청 의료기관 종사자, 인체조직은행의 장 및 특허권자 등을 의미하며, “평가대상 행위의 관련자”라 함은 평가대상 행위 신청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2. 적용범위

- 가.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 나.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의 관련자

3. 적용방법 및 기준

- 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행위 및 치료재료 평가에 관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 나. 위원장이 기피 또는 회피사유로 특정 위원의 위원회 참석을 거부 또는 배제한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행위 및 치료재료 평가에 관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 다. 제척·기피·회피 등의 신청(확인)인은 위원회 회의개최 전까지 FAX 또는 E-mail 등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확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성원 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척 등의 사유

가. 제척사유

- (1)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의 관련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을 말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의 관련자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되었거나 향후 12개월 내에 고용될 예정인 경우
- (3)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의 관련자로부터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자문,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현금이나 물품 등의 보수를 받았거나 향후 12개월 내에 받을 예정인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이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의 관련자의 주식이나 펀드(자산 운용자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지시권한을 갖는 경우)를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 기피사유

결정 및 조정 신청자 등이 위원회의 특정 위원과 제척 또는 회피사유에 준하는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회피사유

- (1) 위원의 소속단체 또는 소속기관에서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의 관련자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임상연구, 연구용역 등에 따라 위원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최근 2년 이내에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의 관련자로부터 강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경우
- (3) 기타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가. 신청(확인)서를 제출받은 위원회의 간사는 빠른 시일 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위원의 회의참석을 배제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다.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척 또는 회피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라. 위원회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향후 10년간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위원은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의 관련자 등으로부터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면담을 자제하되 접촉이나 면담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3.3.22., 2017.9.29., 2018.6.14., 2018.7.13., 2019.6.28., 2020.7.6., 2023.1.19., 2023.12.18.>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활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위원께서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수집 이용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학교(전공), 소속, 직위, 경력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u>경력·자격 확인</u> 및 <u>결정·조정 신청된 행위·치료재료 등의 평가 관련 전문평가위원회 업무 전반</u>	<u>2년</u>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u>국민</u>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 게시	성명, 소속	<u>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u>	<u>2년</u>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 고시) 제13조에 의함

-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 리 인 선 임 서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평가위원회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디지털의료, 인체조직, 질병군, 치료재료)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함.

- 다 음 -

1.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소속기관 및 직위:

2. 대리인 선임 사유:

3. 대리권의 범위

전문평가위원회(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디지털의료, 인체조직, 질병군, 치료재료, 또는 소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의결권한 등 일체

년 월 일

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5.4.13., 2017.9.29.>

부당 청탁사실 보고(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_____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결의서

안 건 명 :

제안이유 :

위 안건을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전문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아래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동 의 여 부		서 명 (인)	기타의견
	찬 성	반 대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서

다음의 안건을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 회의명: 제 차(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디지털의료, 치료재료, 인체조직,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2. 회의일시(검토기한):
3. 의결안건:
4. 보고안건:
5. 안건별 의결서

항목	의결		기타의견
	찬성(O)	반대(X)	
1			
2			

5.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부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인) 서명

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7.9.29., 2018.6.14., 2020.7.6., 2023.12.18.>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결과					
○의결안건:					
구분	소속	성명	의결		
			찬성	반대	기권
학회					
협회					
소비자단체					
학계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small>(의료행위,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함)</small>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		명	명	명	명
○ 보고안건:					

전문평가위원회 명 중 명의 동의를 얻어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의결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서면 검토확인서

다음의 안전을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1. 회의명: 제 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확인 소위원회
2. 회의일시(의결기한):
3. 검토안전:
4. 안전별 검토서

검토항목				기타 의견
	급여·비급여 대상항목과 동일(유사)	안·유고시 항목과 동일(유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	
1				
2				

부의 안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위원 (인) 서명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6.14.><개정 2022.10.13.>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서면 검토결과						
○검토안건:						
구분	소속	성명	급여·비급여 대상항목과 동일(유사)	안·유고시 항목과 동일(유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	기타 의견
학회추천 임상 전문가						
건강보험·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인공지능 디지털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계		명	명	명	명	
○ 보고안건: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명 중 명의 동의를 얻어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2에 따라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위원장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서면 검토 확인서

다음의 안건을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1. 회의명: 제 차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2. 회의일시(의결기한):
3. 검토안건:
4. 안건별 검토서

	검토안건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의견	급여대상 (적응증)	급여 개수	본인 부담률
1					
2					

- ※ 위 안건 검토 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검토
- 가. 신청대상 해당
 -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의 여부
 -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재료 여부
 -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해당 여부
 -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치료재료 해당 여부
 - 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안전성 및 의학적 타당성
 - 다. 대체 치료재료 비교 비용효과성

부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
(인) 서명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